#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207

발의연월일: 2021. 8. 25.

발 의 자:정점식·박덕흠·이 용

김용판 · 조수진 · 박대출

김태호 · 서일준 · 김상훈

김태흠 • 이 영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

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, 현행법에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·조사뿐만 아니라 보급·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이 농어업인 다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·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.

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조 직·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·조사뿐만 아니라 보급·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함(안 제16조제2항제2호).
- 나.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·기술개발, 교육·홍보 및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2 신설).
- 다.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속 또는 산하기관에 재해 예방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두도록 함(안 제16조의3 신설).

##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의 제목 중 "보험사업"을 "보험사업 및 예방사업"으로 한다. 제16조제2항제2호 중 "연구·조사"를 "연구·조사 및 보급·지도"로 한다.

제3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2(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)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1.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·기술개발 및 보급· 지도
  - 2.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
  - 3.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  - 4.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· 운영
  - 5.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6조의3(농어업작업안전재해 전담조직의 운영 등)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작업안 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을 소속 또는 산하기관에 둘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기 관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, 지방자치단 체에 두는 기관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.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인력을 양성하고, 제1항에 따른 조직의 안전관리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의 자격 및 선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교육·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제4항 중 "500백만원"을 "5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장 보험사업의 지원 제3장 보험사업 및 예방사업의 지원 제16조(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제16조(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(생 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----연구·조사 및 정책에 필요한 연구·조사에 관한 사항 <u>보급·지도----</u> <신 설> 제16조의2(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)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 1.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・기술개발 및 보 급・지도 2.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.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
<신 설>

- 4.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- 5.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3(농어업작업안전재해 전담조직의 운영 등)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을 소속 또는 산하 기관에 둘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 행정기관에 두는 기관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,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.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제23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 ④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<u>500백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